

피의사실 단정 보도, 추후보도
및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

01

A 방송은 경기도의 한 영어유치원 교사인 신청인들이 CCTV 사각지대에서 원생들을 체벌하고 학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5회에 걸쳐 보도하면서 해당 유치원 건물의 내·외부 모습 및 관련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함께 방영했다. 이에 신청인들은 해당 혐의에 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, 이 사건 보도는 CCTV 영상을 편집하여 실제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된 인상을 주었고 피의사실이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

심리결과, 중재부는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며 신중한 취재가 요구될 것인데,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인상은 신청인들의 피의사실이 매우 단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인정,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. 이에 배상액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추후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8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.

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
초상권 침해 보도, 기사수정
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

02

B 신문은 대학로에서 벌어지는 공연 호객행위를 보도하면서 전단을 배포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, 보도하였다.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대학로에서 불법 호객행위를 한 적이 없고, 단지 공연 소개를 위해 전단을 배포했을 뿐인데,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초상이 공개되어 배우가 꿈인 신청인의 이미지가 훼손되었고, 초상권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.

B 신문은 신청인의 얼굴이 가려져 있어 당사자임을 식별할 수 없고, 설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. 심리결과, 중재부는 해당 보도는 신청인의 얼굴이 행인에 의해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, 신청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, 의복 등이 노출되었고, 피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도의 공익상 이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신청인을 촬영, 보도하여야 할 필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. 이에 중재부는 해당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,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,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이 결정은 확정됐다.

수감 중인 당사자,
변호사 조력제도 이용하여
정정보도로 합의

03

C 방송사는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의 보도에 근거하여, 국내에서 토막 살인을 저질러 복역중인 신청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같은 수법의 살인을 저질렀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중국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보도했다. 그러나 신청인은 19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신청인과 무관하고 신청인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이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받은 바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

중재부는 C 방송사가 신화통신의 보도에 근거하였지만 실제 보도에서는 인용보도 형식을 취하지 않은 점, C 방송사가 신화통신 보도 이외에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권유했다.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. 이 사례는 수감 중인 신청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절차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는데, 위원회는 2012년 「언론조정 및 중재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조력에 관한 세칙」을 마련하여, 당사자가 조정중재절차를 이용하면서 출석 및 진술 등이 곤란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공감블로그 속 『**연초** **사람**』 4월호 100자평

하승년 님

『**연초** **사람**』이라는 잡지를 이번엔 처음 접했습니다. 각 지면의 글 하나하나가 아주 유익했습니다.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. 베르디의 리골레토가 그러한 사연이 있는 오페라인 줄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살이 되고 피가 되는 『**연초** **사람**』 잘 읽었습니다.

정숙경 님

인터뷰 지면에서 조용구 사법연수원장님을 만나 뵈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.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2011년 닥터머스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을 소개해주셨죠.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여운이 일어납니다. 귀하고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. 저 역시 마음을 다잡으려 담담하게 나아가려 합니다.

윤지선 님

이번 호에는 <로봇 저널리즘> 기사가 눈에 띄네요. 최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때문인지 로봇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해왔는지 관심이 많았는데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로봇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.

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(<http://pacblog.kr>) 『**연초** **사람**』 5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5월 20일(금)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트콘(2만원 상당)을 드립니다.